제76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리기준(신설)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 개정	1.비중요
2	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산출의 합리화(강화) ○ 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의 산출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삭제 - 해당 의약품의 특징, 유병율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의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자료를 마련토록 하여 재심사 제도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	1.비중요
3	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정안 (기상청)	1.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공차(신설) o 제3조(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 및 공차) ② 지진 관측 장비의 공차는 별표 2와 같다.	1.비중요
4	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정안 (기상청)	1.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(신설) 제11조(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)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1. 연간 검정계획서(해당연도 개시 후 10일까지) 2.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(분기 및 해당연도 경과 후 10일까지) 3.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 검정설비 운영 및 변동사항 5.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료 2.검정대행기관의 점검(신설) 제12조(검정대행기관의 점검)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. 이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지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1.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.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.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상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2.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 4. 검정자료의 작성·관리 및 검정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. 검정설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 기록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 6.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7. 기상청장의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 이행사항 8.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(이하 “점검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⑤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은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. ⑥ 점검공무원은 점검이 끝나면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⑦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기상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	
5	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상습 과적·적재불량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료 감면 한시제외(강화)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과적·적재불량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일자, 과태료 부과 차량번호, 운전자 성명·연락처 등 자료 요구 근거 마련	
6	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상주감리 내실화(신설)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확인을 받은 작업허가제 의무화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(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)은 동시작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화재발생 우려 원천 차단 2.비상주감리 내실화(신설) 감리 내실화를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등 위험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	1.비중요 2.비중요
7	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(교육부)	1.교원양성위원회에 재학생 등 포함 의무(강화) -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은 교육공무원, 전임교원,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 중에서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-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에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을 최소한 한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무시험검정에 성인지 교육 이수기준 추가(강화) -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과목별 이수학점기준, 성적기준,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(연 1회 이상) 추가	
8	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 방지를 위한 요건(강화) ㅇ 인화성 액체물질, 액체화학품이 누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기존 정전기 방지용 장비 외 추가로 정전기 방지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- 위험구역에서 이동형 펌프(공기 구동형, 수(水) 구동형 등), 장갑, 스패너, 망치는 정전기 방지용으로 의무사용	1.비중요
9	선박설비기준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선원 외의 자가 13인이상 승선하는 화물선의 탈출설비 등 요건(강화) 임시승선자 등 선원 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총통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등의 선박은 국내항해 여객선과 동일하게 탈출설비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규정	1.비중요
10	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(고용노동부)	1.보수교육 종류별 이수 시간(신설) ㅇ 사전 규제 심사 결과, 제4조(기초교육), 제5조(기본교육) 및 제6조(전문교육)가 규제심사대상으로 언급됨 ㅇ (기초교육) 모든 훈련 교강사는 1년에 2시간의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직업훈련 관련 법, 제도, 기초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적인 교수기법을 내용으로 함 ㅇ (기본교육) 훈련 교강사 중에서 특정 훈련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1년에 12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직종별 전문지식 및 기술,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기법, 훈련생 지도 및 상담 방법 등을 그 내용으로 함 ㅇ (전문교육) 훈련 교강사 중에서 강의 외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1년에 8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훈련성과 및 훈련생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	
11	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항공기 탑승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확인의무 부과(신설) ○ (항공기 탑승자) 생체인증 항공보안 본인확인 업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 ○ (항공운송사업자) 관련 행정기관이 제공한 생체정보와 현장에서 수집된 탑승자의 생체정보를 대조하여 탑승권 발권, 수하물 위탁,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항공보안 본인확인 업무 수행 2.항공운송사업자에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의무 부과(신설) 생체정보 활용 시 생체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암호화기술을 적용한 저장·전송,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관시설 마련 등을 의무화	